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확정

정부는 12. 30.(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10. 30. 발표된 「시장개혁 로드맵(안)」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차단 방안 및 전자투표제, 공익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로드맵(안) 발표 이후 49개 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 학계·재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로드맵(안)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 및 공익소송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간담회 등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는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중 발족할 계획인 상법개정특위를 통해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공익소송제 도입 문제는 집단소송·단체소송 및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도 등 여러 대안을 포함하여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도입시기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제한,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금융회사의 투명성 강화,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행사내역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의결권행사 범위(현행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제한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문제는 2004년중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12. 24. 전원 회의를 개최하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였다.

'99. 10. 23. 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그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3개 분야, 22개 업종, 4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금번 제4차 개정은 그 동안 새롭게 발굴된 부동산분양업(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 여행업 2개 업종(추가경비 유무, 보증보험 가입여부)을 신규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시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고시내용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사업자들이 표시·광고행위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개정고시는 관보게재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고시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 등 계도에 필요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2004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감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고시개정 후에도 중요정보고시 대상업종 선정에 대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분석·반영함으로써 신규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85면 이하) 참고바람

7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소속 자회사를 대상으로 9. 25.부터 10. 31. 기간 동안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5개 공기업이 총 2,700억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통하여 472억원을 부당지원 한 사실 및 6개 공기업이 시공업체 등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총 464백만원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사실 등

을 적발하였다.

먼저 부당지원행위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인 (주)파워콤에게 배전전주 및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고어를 저가로 임대하여 지원하고 ▶도로공사는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및 고속도로정보통신(주)에 대하여,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대하여 각각 시설유지보수 및 도장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고가로 낙찰시켜 지원하였으며 ▶기타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는 각각 (주)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임대보증금



〈공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

(단위 : 개사, 백만원)

공기업	수혜업체	지원성거래 규모	지원금액
한국전력	1	37,043	24,695
도로공사	2	227,955	22,027
주택공사	1	3,662	366
수자원공사	2	554	61
가스공사	1	715	71
총계	7	270,019	47,220

저리대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저가임대, 경인운하(주) 및 칠곡엔바리로(주)에 대한 인력파견을 통하여 부당지원 하였다.

또한 공기업이 독과점적지위를 남용하여 시공업체 등 거래상대방에게 총 464백만원의 불이익을 부담시켰는데, ▶한국전

력공사는 공사지연보상금 미지급, 공사비의 일방적 감액, 납기연기에 따른 추가 보증수수료 미지급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하여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지급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2→1%) ▶주택공사는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예치금 반환시 이자 미지급

〈공기업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공기업	위반건수	위반내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제공	기타 위반유형
한국전력	5	284	· 거래개시 거절 ·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도로공사	1	110	-
주택공사	2	57	·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토지공사	1	-	·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수자원공사	2	13	·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농업기반공사	3	-	·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기타 입찰참가자격 차별설정을 통한 거래거절,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위반 공기업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명령(한전, 도공, 주공)을 하고 5개 공기업에 대하여는 총 36.7억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대해 각각 50백만원, 25백만원씩 총 7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공기업별 과징금 부과액(백만원)〉

	한 전	도 공	주 공	수자원	가 스	계
부당지원	343	2,191	146	24	28	2,732
일반불공정	568	220	125	26	-	939
계	911	2,411	271	50	28	3,671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개선 등을 위한 하도급자문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안)과 자사브랜드제품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안)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하도급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발생시점을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하고, 직접지급 의무 이행기한을 규정하며, 미정산 선금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대상에서 미정산 선금금을 제외하고,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묵시적인 직접지급 합의를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자사브랜드제품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발주 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방법으로는 추가 비용 소요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고, 단가 결정은 수량, 사양, 납기, 재료비,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하며, 납품 및 수령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게 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대금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를 준용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검토 한 후 안을 확정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은 하도급법시



행령, 지침 등에 반영하고, 자사브랜드제품 표준화도급기본계약서는 교육·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사 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2003년도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12. 19(금),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소비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소비자정책협의회”는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처음 구성한 협의체로서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3년도 소비자시책

주요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정위가 잠정 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2004년도 소비자시 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공정위는 2004년에는 ▶효율성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상 제시 ▶ 급변하는 소비자환경에 걸맞는 관련 제도의 확충 ▶소비자피해구제의 내실화로 소비자정책의 성과 제고 ▶소비자정책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정책목표를 두고 제 반 소비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 하고 있다.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 관련 개선조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도 그룹별 소비자시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삼성카드(주), 엘지카드(주) 등 2개사가 포인트 적립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카드회원들이 기적립 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제휴업체 등 멤버십 서비스의 내용을 신용카드사가 「사전예고 없이」 변경·중 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5개사(삼성 카드(주), 국민카드(주),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의 불공

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멤버십 서비스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강 화를 위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탈퇴시 또는 포인트 제도 변경·폐지시 잔여포인트 인 정여부 및 사용방법, 신용카드 종류별 제휴



업체명, 제휴내용, 계약기간, 계약갱신가능성 등의 멤버십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중요 표시·광고사항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포인트 제도를 변경·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의 기존 적립 포인트에 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폐지시 기적립 포인트의 보상규정, 사전고지된 제휴서비스의 중단·축소시 보상규정 등의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중에 있다.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하여 포인트 제도 변경·폐지시 기적립 포인트의 보상규정, 사전고지된 제휴서비스의 중단·축소시 보상규정 등의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중에 있다.

2003. 1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1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3년 12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 1. 현

재 342개로 전월 대비 1개사가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2. 1. 489개에서 2004. 1. 1. 현재 505개로 16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2. 1. 현재 832개에서 2003. 12월중 22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7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1. 1. 현재 847개로 15개사가 증가하였다.

[2003. 12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12.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1.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3	-	1	1	1	1	-	-	-	2	△1	342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489	2	19	21	1	-	2	-	2	5	16	505
합계(48개)	832	2	20	22	2	1	2	-	2	7	15	847



[2003. 12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22개사(회사설립 : 2, 주식취득 : 1, 기타 : 19)

◆ 제외 : 7개사(청산 : 2, 파산절차 : 1, 기타 : 4)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한화	한화폴리드리머(주)	플라스틱및 기타 제조업	합병	한화포리매(주)	제조 및 도소매업	기타
대림	에코솔이홀(주)	하수처리장 건설 관리 운영업	회사설립	-	-	-
씨제이	씨제이 파워캐스트(주)	방송송출 대행사업	회사설립	-	-	-
태광 산업	(주)한빛아이엔비	종합유선방송업	주식취득	-	-	-
	(주)한빛기남방송	방송서비스	기타			
	(주)한빛등남방송	종합유선방송업	"			
	(주)한빛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업	"			
	(주)한빛새롬방송	유선방송 부가통신업	"			
	(주)한빛낙동방송	종합유선방송업	"			
	(주)한빛서부산방송	종합유선방송업	"			
	(주)한빛전주방송	종합유선방송업	"			
	(주)한빛케이블티브이 새로넷방송	TV유선방송 부가통신업	"			
	(주)이전 유선방송사	유선방송 송출사업 외	"			
	(주)안성유선방송사	중계유선 방송업외	"			
	(주)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	서비스 유선방송외	"			
	(주)한국디지털케이블 미디어센터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			
	(주)온케이블 티브이	종합유선 방송업	"			
	(주)서구유선방송	TV유선방송	"			
	동양유선방송(주)	유선방송	"			
	한국도서보급(주)	금융서비스	"			
	전주반도유선방송(주)	인터넷서비스	"			
	(유)전주유선방송사	인터넷서비스	"			
엘지	-	-	-	엘지산전(주)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기타
삼보 컴퓨터	-	-	-	(주)나래엔 컴퍼니	별정통신업	파산절차
	-	-	-	(주)유베이스테크놀로지	컴퓨터설계 및 자문업	청산종결
코오롱	-	-	-	(주)인테크럴에스에아	섬유의류피혁제품의 제조판매업	기타
한솔	-	-	-	(주)한솔저축은행	신용부금업	기타
영풍	-	-	-	고려산업기계(주)	산업기계설치제작업	청산종결

공정위 인사

발령

2003. 11. 15.

홍승현 행정사무관(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3담당관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3. 11. 17~2004. 1. 31)

2003. 12. 10.

이태휘 행정사무관(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실 근무를 명함

김경만 행정사무관(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
조달청 근무를 명함

2003. 12. 16

조성국 서기관
미국 텍사스 서부지부 연방지방법원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3. 12. 28~2004. 5. 27)

2003. 12. 17.

백대용 행정사무관(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획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3. 12. 20.

김준범 서기관(위원장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삼성카드(주) 근무를 위한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3. 12. 22~2004. 12. 21)

2003. 12. 22.

채규하 서기관(독점국 기업집단과장)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를 위한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3. 12. 23~2004. 12. 22)

박귀찬 서기관(독점국 독점관리과장)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포스코 근무를 위한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3. 12. 24~2004. 12. 23)

전보

2003.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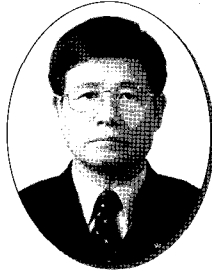
홍영철 행정사무관(독점국 독점관리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에 보함



신규회원사 소식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림콘크리트(주)
대표이사 서 봉 삼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B/D 15층

공정거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한국공정거래협회는 회원사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화우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자원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협회 TEL. (02)775-8870~2 FAX. (02)775-8873
- 법무법인 화우 TEL. (02)6003-7000 FAX. (02)6003-7800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을 분기별로 수록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을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2권2집**
 - 2002년도 2/4분기(2002. 4. 1~6. 30) 공정위 심결 수록, 483면
 - 2003년 12월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25,000원 / 비회원(사) 30,000원
-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2권3집**
 - 2002년도 3/4분기(2002. 7. 1~9. 30) 공정위 심결 수록, 568면
 - 2003년 12월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0,000원 / 비회원(사) 35,000원
-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2권4집**
 - 2002년도 4/4분기(2002. 10. 1~12. 31) 공정위 심결 수록, 786면
 - 2003년 12월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5,000원 / 비회원(사) 40,000원
-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3권1집**
 - 2003년도 1/4분기(2003. 1. 1~3. 31) 공정위 심결 수록, 594면
 - 2003년 12월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0,000원 / 비회원(사) 35,000원
- 5)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제23권2·3집**
 - 2003년도 2·3/4분기(2003. 4. 1~9. 30) 공정위 심결 수록, 693면
 - 2003년 12월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5,000원 / 비회원(사) 40,000원

도서문의 및 구입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fta.org) 및
준법지원실(775-8870~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